세종 리더스포레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나릿재마을 2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12.06.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 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6.12.06.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fore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경기도과천시·성남시·광명시–전역 /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시·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공공택지 /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대구시 수성구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함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이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3509호(2017.12.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O3블록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지상49층, 8개동 8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아파트 1,405대, 근린생활시설 180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426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4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5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해당동	최저층 우선 배정 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이전 기관종사자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당해	다자녀가구 기타	신혼부부 당해	신혼부부 기타	노부모부양 당해	노부모부양 기타	계				
민영 주택	2017001722-01	84.7560A	84A	84.7560	25.3877	110.1437	5.8407	50.2290	166.2134	41.3056	60	30	6	3	3	3	3	1	1	50	10	202동, 203동	2	'21년 6월
	2017001722-02	84.8237B	84B	84.8237	26.4812	111.3049	5.8453	50.2692	167.4193	41.3386	116	58	12	6	6	6	6	2	2	98	18	204동	3	
	2017001722-03	84.9676B	84B-1	84.9676	26.3671	111.3347	5.8552	50.3544	167.5444	41.4087	34	17	3	2	1	2	1	1	–	27	7		1	
	2017001722-04	84.6868C	84C	84.6868	27.5759	112.2627	5.8359	50.1880	168.2866	41.2719	86	43	9	5	4	5	4	2	1	73	13	205동	2	
	2017001722-05	84.6092D	84D	84.6092	24.9937	109.6029	5.8305	50.1420	165.5754	41.2341	54	27	5	3	2	3	2	1	1	44	10	207동, 208동	2	
	2017001722-06	84.8238E	84E	84.8238	26.4229	111.2467	5.8453	50.2692	167.3612	41.3386	54	27	5	3	2	3	2	1	1	44	10		2	
	2017001722-07	84.9308F	84F	84.9308	26.5989	111.5297	5.8527	50.3326	167.7150	41.3908	15	8	2	1	1	1	1	–	–	14	1	201동	–	
	2017001722-08	99.8149A	99A	99.8149	29.8742	129.6891	6.8784	59.1534	195.7209	48.6445	18	9	–	1	1	–	–	–	–	11	7	202동, 203동	–	
			99A-1,2	99.8149	29.8742	129.6891	6.8784	59.1534	195.7209	48.6445														
	2017001722-09	99.8498B	99B	99.8498	29.4557	129.3055	6.8808	59.1741	195.3604	48.6615	54	27	–	3	2	–	–	1	1	34	20	207동, 208동	2	
	2017001722-10	99.2408C	99C	99.2408	29.0593	128.3001	6.8388	58.8132	193.9521	48.3647	58	29	–	3	3	–	–	1	1	37	21	202동, 203동	2	
	2017001722-11	99.2433D	99D	99.2433	31.1057	130.3490	6.8390	58.8147	196.0027	48.3659	75	38	–	4	4	–	–	1	1	48	27	204동, 206동	2	
	2017001722-12	99.2578E	99E	99.2578	30.2656	129.5234	6.8400	58.8233	195.1867	48.3730	38	19	–	2	2	–	–	1	–	24	14	205동	1	
	2017001722-13	100.8801A	100A-1	100.8801	30.3086	131.1887	6.9518	59.7847	197.9252	49.1636	5	3	–	–	–	–	–	–	–	3	2	204동, 206동	–	
	2017001722-14	100.2201A	100A-2	100.2201	29.8988	130.1189	6.9063	59.3935	196.4187	48.8420	5	3	–	–	–	–	–	–	–	3	2		–	
	2017001722-15	114.7151A	114A	114.7151	31.7399	146.4550	7.9052	67.9837	222.3439	55.9061	6	3	–	1	–	–	–	–	–	4	2	202동, 203동	–	
	2017001722-16	114.8564B	114B-1,2	114.8564	32.0130	146.8694	7.9149	68.0675	222.8518	55.9749	48	24	–	3	2	–	–	1	–	30	18		–	
	2017001722-17	114.7408C	114C	114.7408	34.4802	149.2210	7.9069	67.9990	225.1269	55.9186	61	31	–	3	3	–	–	1	1	39	22	204동, 206동	–	
			114C-1	114.7408	34.4802	149.2210	7.9069	67.9990	225.1269	55.9186														
	2017001722-18	114.6115D	114D	114.6115	33.2853	147.8968	7.8980	67.9223	223.7172	55.8556	7	4	–	1	–	–	–	–	–	5	2	205동	–	
	2017001722-19	114.3929E	114E	114.3929	34.3346	148.7275	7.8830	67.7928	224.4032	55.7491	26	13	–	2	1	–	–	1	–	17	9		–	
	2017001722-20	119.9969A	119A	119.9969	37.7725	157.7694	8.2692	71.1139	237.1524	58.4802	11	6	–	1	–	–	–	–	–	7	4	201동, 202동,203동	–	
	2017001722-21	119.1097B	119B	119.1097	37.7889	156.8986	8.2080	70.5881	235.6947	58.0478	11	6	–	1	–	–	–	–	–	7	4		–	
	2017001722-22	147.2495P	147P	147.2495	47.4432	194.6927	10.1472	87.2646	292.1045	71.7616	2	1	–	–	–	–	–	–	–	1	1	202동, 203동	–	
	2017001722-23	149.4479P	149P	149.4479	46.5241	195.9720	10.2987	88.5675	294.8382	72.8330	1	–	–	–	–	–	–	–	–	–	1	204동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천원)

주택형	타입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계약시	2018.05.03	2018.12.03	2019.07.03	2020.02.03	2020.10.05	입주지정일
84.7560A	84A	202동(5호) 203동(5호)	60	3층	2	72,373	247,627	–	320,000	30,000	34,000	32,000	32,000	32,000	32,000	128,000
				4층	2	72,373	251,027	–	323,400	30,000	34,680	32,340	32,340	32,340	32,340	129,360
				5층	2	72,373	254,427	–	326,800	30,000	35,360	32,680	32,680	32,680	32,680	130,720
				6층~10층	10	72,373	264,827	–	337,200	30,000	37,440	33,720	33,720	33,720	33,720	134,880
				11층~20층	20	72,373	268,227	–	340,600	30,000	38,120	34,060	34,060	34,060	34,060	136,240
				21층~30층	20	72,373	271,627	–	344,000	30,000	38,800	34,400	34,400	34,400	34,400	137,600
				31층~32층	4	72,373	285,427	–	357,800	30,000	41,560	35,780	35,780	35,780	35,780	143,120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접수장소에 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특화서비스 「주택신청」 ▶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APT청약신청 ▶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중앙회,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배우자,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관계확인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일시 : 2017.12.12.(화), 14:00 • 확인방법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www.housing.or.kr)	• 일시: 2017.12.21.(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sejongforet.com)	• 일시 – 2018.01.03.(수)~2018.01.05.(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기타 (기관추천)	• 일시 : 2017.12.13.(수),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 경쟁에 의한 추첨은 특별공급 접수일 당일 진행함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7.12.21.(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2순위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배정 추첨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인터넷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7.12.21 ~ 2017.12.30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의 ARS 주택당첨조회서비스는 2017년 06월 15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12.21.(목) 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V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1.03(수) ~ 2018.01.05.(금) 3일간, 10:00 ~ 16:0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세종 리더스포레 견본주택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계 약 시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공통	O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O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O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O		– 주민등록표등본 1통
			O	– 주민등록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O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O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신청시)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O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O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동·호수 발표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O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만65세이상인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O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를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1순위 청약자격 제한대상,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름.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분양대금 납부	1005-803-349551	(주)한화건설외 2개사

※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옵션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 대출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로서, 중도금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중도금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40%이며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해주며, 입주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잔금을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해당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1년 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 경로당(1), 어린이집(1),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 G.X룸],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1), 독서실(1), 맘앤키즈카페(1), 맘스스테이션(1), 플레잉 하우스(1), 크래프트하우스(1), 주민카페(1), 게스트하우스(3), 스테이케이션(3)] 등 주민공동시설 내 운동시설 및 집기류, 가구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VII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플러스 옵션,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구분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	공급가격	계약금 계약시(20%)	잔 금 입주지정일(80%)
84.7560A	84A	26.1488	12,870,000	2,574,000	10,296,000
84.8237B	84B	26.6752	12,540,000	2,508,000	10,032,000
84.9676B	84B-1	26.5702	12,540,000	2,508,000	10,032,000
84.6868C	84C	24.0195	12,870,000	2,574,000	10,296,000
84.6092D	84D	24.8550	12,650,000	2,530,000	10,120,000
84.8238E	84E	29.6147	13,970,000	2,794,000	11,176,000
84.9308F	84F	33.0967	14,190,000	2,838,000	11,352,000
99.8149A	99A	28.1428	13,200,000	2,640,000	10,560,000
	99A-1,2	25.9220	12,870,000	2,574,000	10,296,000
99.8498B	99B	28.0132	14,080,000	2,816,000	11,264,000
99.2408C	99C	28.1388	14,080,000	2,816,000	11,264,000
99.2433D	99D	25.7252	12,870,000	2,574,000	10,296,000
99.2578E	99E	27.9901	13,970,000	2,794,000	11,176,000
100.8801A	100A-1	20.6248	10,890,000	2,178,000	8,712,000
100.2201A	100A-2	20.0036	11,440,000	2,288,000	9,152,000
114.7151A	114A	27.2399	13,860,000	2,772,000	11,088,000
114.8564B	114B-1,2	26.0127	13,200,000	2,640,000	10,560,000
114.7408C	114C	32.5350	15,400,000	3,080,000	12,320,000
	114C-1	29.9775	14,960,000	2,992,000	11,968,000
114.6115D	114D	35.8377	17,160,000	3,432,000	13,728,000
114.3929E	114E	33.6689	15,620,000	3,124,000	12,496,000
119.9969A	119A	41.1104	17,930,000	3,586,000	14,344,000
119.1097B	119B	43.8192	18,590,000	3,718,000	14,872,000
147.2495P	147P	60.8475	19,580,000	3,916,000	15,664,000
149.4479P	149P	55.4698	20,570,000	4,114,000	16,456,000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발코니 및 플러스 옵션	1005-503-349548	(주)한화건설외2개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계좌로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 신청이 불가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마다 수전, 드레인, 선홈통의 설치 유무가 다르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의 등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일체의 계약변경[신규계약 체결 및 해지(해제)]이 불가능 하며, 분양권 전매시 전매수인은 기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승계 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플러스 옵션

• 플러스 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및 플러스 옵션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및 플러스 옵션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시 설치 가능함.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등의 사유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등 플러스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는 냉방 전용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과 침실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 매립 배관이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기본형 선택시 거실과 안방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아니하고 전실형 선택시 전실 냉매매립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가동시에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플러스 옵션의 가격은 다양한 여건에 의해 산정된 가격으로서 타입간 비교, 옵션별 비교 등 주관적인 사유를 근거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음. • 플러스 옵션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TBI 냉장고 (플러스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설치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비 고
전 타입	삼성전자	RS674CHQFSR	4,500,000	1,000,000	3,500,000	(총용량 672L)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설치 위치	설치개소	설치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84.7560A	84A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200,000	1,500,000	5,700,000
84.8237B	84B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200,000	1,500,000	5,700,000
84.9676B	84B-1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200,000	1,500,000	5,700,000
84.6868C	84C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200,000	1,500,000	5,700,000
84.6092D	84D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200,000	1,500,000	5,700,000
84.8238E	84E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200,000	1,500,000	5,700,000
84.9308F	84F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200,000	1,500,000	5,700,000
99.8149A	99A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000,000	1,500,000	6,500,000
	99A-1,2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000,000	1,500,000	6,500,000
99.8498B	99B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000,000	1,500,000	6,500,000
99.2408C	99C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100,000	1,500,000	5,600,000
99.2433D	99D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100,000	1,500,000	5,600,000
99.2578E	99E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000,000	1,500,000	6,500,000
100.8801A	100A-1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100,000	1,500,000	5,600,000
100.2201A	100A-2	거실+주방+안방	3	4,600,000	1,000,000	3,6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	7,100,000	1,500,000	5,600,000
114.7151A	114A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1,000,000	3,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200,000	1,500,000	6,700,000
114.8564B	114B-1,2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1,000,000	3,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200,000	1,500,000	6,700,000
114.7408C	114C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1,000,000	3,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200,000	1,500,000	6,700,000
	114C-1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1,000,000	3,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200,000	1,500,000	6,700,000
114.6115D	114D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1,000,000	3,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200,000	1,500,000	6,700,000
114.3929E	114E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1,000,000	3,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6	8,200,000	1,500,000	6,700,000
119.9969A	119A	거실+주방+안방	3	4,900,000	1,000,000	3,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	8,600,000	1,500,000	7,100,000
119.1097B	119B	거실(2)+주방+안방	4	5,500,000	1,000,000	4,5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	9,000,000	1,500,000	7,500,000
147.2495P	147P	거실(2)+주방+안방	4	6,900,000	1,000,000	5,900,000
		거실(2)+주방+알파룸2+안방+침실1+침실2+알파룸1	8	11,000,000	1,500,000	9,500,000
149.4479P	149P	거실(2)+주방+안방	4	6,900,000	1,000,000	5,900,000
		거실(2)+주방+알파룸2+안방+침실1+침실2	7	11,000,000	1,500,000	9,500,000

■ 시스템 에어컨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발코니 및 플러스 옵션	1005-503-349548	(주)한화건설외2개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침실기준으로 냉매매립배관이 시공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에는 기본제공품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가 제외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는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세대 및 복층형세대 유의사항

• 각 세대 테라스는 위치 및 배치 여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임에도 크기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각종홍보물 상의 테라스(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동일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테라스(옥외)출입여부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형태가 일부 다르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테라스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의 유무 또는 위치에 따라 창호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테라스가 있는 경우 내부 발코니 창호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음. •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유의사항 내용을 매수인에게 인지하도록 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제3자가 분양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에 다른 세대 등이 위치하므로 이용자들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테라스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하부층 지붕에 의해 자연발생적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유화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하부층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인의 출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테라스가 형성되는 부위에는 우수 등의 처리를 위하여 선홈통 배관이 골조 등에 매입 시공되거나 노출되어 계획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부층 세대의 물흐름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 및 외부공간에는 무동력환기팬, 통기관 등 하부세대의 설비를 위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냄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라스는 공급면적에서 제외되었음.

▣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마이너스 옵션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으로 한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일괄 선택 (개별 선택 불가)	바닥재	〈강마루〉거실,주방,식당,복도,안방,침실,드레스룸, 〈타일,인조석〉현관, 화장대(상판), 〈타일〉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장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 경량천장틀,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타일(바닥,벽),천장,젠다이(인조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스위치,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	주방TV 상,하부장,판넬,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벽판넬,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절수페달	설비배관, 전기, 통신,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자녀붙박이장, 자녀드레스룸,세탁실, 발코니수전, 세탁선반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에어컨냉매배관(거실,침실)

※ 상기 품목은 주택형 별로 상이하며, 주택형별 기본제공 품목에 한하여 해당됨. 명시되지 않은 기본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 제공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84A	84B	84B-1	84C	84D	84E	84F	99A	99A-1,2	99B	99C	99D
금 액	26,930,000	27,214,000	27,221,000	27,448,000	26,447,000	26,844,000	25,980,000	31,261,000	31,261,000	32,296,000	32,447,000	32,965,000

구 분	99E	100A-1	100A-2	114A	114B-1,2	114C	114C-1	114D	114E	119A	119B	147P	149P
금 액	32,756,000	33,177,000	32,907,000	36,489,000	36,592,000	37,178,000	37,178,000	36,848,000	37,055,000	37,438,000	37,232,000	47,631,000	47,944,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단,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과 미선택 중 택일 할 수 있을 뿐이며,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시스템에어컨은 별도 선택 옵션 품목이므로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과는 관련없음. (단,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선택 시 선택품목은 제공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승인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와 무관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공사는 사용검사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VIII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행복도시 내 모든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외벽면에 건설업체명이나 브랜드명, 심볼과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마을이름과 주동번호만을 표기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 자문위원회"에서 2-4생활권은 "나릿재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길 바람. •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 등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 타사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 하드웨어 등)는 본공사시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그림,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건립평형 외 시공되는 평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전용으로 본 공사[옵션 선택]시 냉방전용에어컨이 제공되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배면부 특화를 통한 입면변화로 동일타입이라 할지라도 창호의 위치가 변화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어 계약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 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과 배치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기본품목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발코니확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아파트 외관이 달라질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이 가능한 발코니 중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당 2-4생활권의 HO3블록은 적법한 색채심의를 얻어 계획되었으며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해 입주자 개인 또는 연대의 취향을 토대로 색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색채변경을 시행 할 경우 행복청의 도시미관심의를 통해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함. • 색채특화를 위하여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색상, 디자인, 재질,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함,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명기된 집기류등의 표기는 집기배치 적정성 검토등을 위해 명기된 것으로 사업승인도서상의 집기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집기는 계약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후 계약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인동거리에 제한을 받지않은 인접건물의 창호간의 시야간섭, 입면 장식, 지붕 태양광 집열판,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내 모형, 카탈로그, 관계직원 상담등을 필히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쓰레기이송설비시스템 투입구,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광덕트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DA, 쓰레기분리수거장(클린넷시설포함),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주차출입시 동일한 주차출입구(단지 북측)를 이용하게 되므로 입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용자는 중앙의 주차경사로를 이용하고,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는 외편의 주차경사로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음. 주차장은 용도별로 지하에서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획은 지하1층에만 설치됨.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를 위하여 단지내에 쓰레기 투입구(일반용, 음식물용)가 설치(투입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되며, 별도의 쓰레기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는 비치되지 않음 단, 초기 가동이 불가할 경우 쓰레기 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가 비치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민편의시설이므로 관리비(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투입구 사용시기는 운영주체와 관리사무소가 협의하여 결정함. • 견본주택에 전시된 가전의 설치위치는 표준사용규격에 준하여 설치되므로 특수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냉장고,세탁기 등)을 사용하실 경우 가전제품의 규격(폭,높이,깊이)등으로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의 빌트인가구의 규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시 이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및 부속안전시설물에 의해 소음공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마감자재리스트의 사양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며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공사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사전점검행사 전 샘플세대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등을 통한 현장방문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하며 당사와 협의되지 않은 개별계약 및 분양권전매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당사는 일체 보상행위를 할 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므로 상이한 주택형별 공급금액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의 증감 시 현재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 내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상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비상시 재해는 계약자본인이 책임져야 함.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공유면적(대지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음. • 당 단지는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계획된 단지이며, 시설용도별 대지구획이 없는 공유토지로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서비스면적이 상이한 이형세대가 있으며(측벽발코니타입),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각급 학교의 개교, 전·입학 및 학급편성, 학교(교육과정 등) 운영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될수 있으며 학교 개교 일정에 따라 타생활권으로 통학 할수도 있음. • 중도금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중도금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주출입구는 지하주차장 출입 경사로, 경사로 지붕구조물이 및 회차 공간이 설치되며, 주차장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추후 경미한 설계변경 및 확정측량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43,719.000㎡	39,347.1000㎡	4,371.9000㎡	32.6528%	278.5264%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름

■ 단지외부여건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광장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주변단지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문주 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등은 '세종시 2-4 생활권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라 그 기준에 준하여 계획 설치될 예정임.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종시 기반시설(도로) 조성계획에 따라 준공시 아파트 진출입 동선이 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 인접부지(단지 남측 문화시설부지, 서측 주상복합시설 건립 예정) 건축물의 건립으로 조망, 사생활 침해, 소음, 조명에 따른 눈부심 발생 등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주변 동측의 수변공원 및 남측 광장의 공공조경은 도시계획시설로 당 부지 외 대지이므로 입주민 요구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둘레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브랜드 로고의 위치, 크기 및 동 표시 등은 지역 가이드라인과 광고물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각종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입면디자인,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단지 주·부 출입구에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스테이케이션,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 환기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클린넷 설비는 세종시 전체 관로설비 공사일정에 따라 사용시점이 당 현장의 준공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의 HC3블록과 연결되는 보행육교는 추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등의 인허가 절차에 의해 설치 위치, 형태, 디자인, 기부채납 및 지상권설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또한 보행육교설치로 인해 단지 내 일부조경시설이나 포장 및 건축물 구조물 등의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음. • 추후 우리단지 북측으로 지구단위계획상 5층이하의 공공청사,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계획중이며, 소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설치되며 이로 인한 기능변경 등은 입주완료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변경 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북카페, 주민운동시설, 스카이커뮤니티 등)은 신재생에너지 기준에 의하여 지열시스템이 설치되고, 이로 인한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태양광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당 2-4생활권의 HC3,HO3블록은 경관색채심의를 얻은 사업승인으로 도시미관의 정비를 위해 입주자 개인 또는 연대가 색채의 변경을 시행할 수 없으며 색채변경을 시행 할 경우 행복청의 도시미관심의를 통한 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를 위하여 단지 내에 쓰레기 투입구(일반용, 음식물용)가 설치되며, 별도의 쓰레기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는 비치되지 않음 단 초기 가동이 불가할 경우 쓰레기수거용기(일반용, 음식물용)가 비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독서실, 주민운동시설, 맘앤키즈카페, 주민카페, 스테이케이션 등)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계약전 본인의 세대 주변의 시설물을 확인후 계약을 시행하여야 함. • 재활용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지상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천창, 재연설비 환기구, 광덕트,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투입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 및 필로티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창호형태 및 입면장식물등으로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단지 출입구 경비실 및 차량출입통제시설의 위치, 문주 등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공원, 광장,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도로변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인접한 일부 동에는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옥외공간,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대한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설은 지하층 출입구에 설치예정이며, 일부 동에 대해서는 출입구에서의 이용거리가 멀어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설치위치 불합리등의 사유발생시 통합설치 또는 위치이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세대의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THK 30(경량충격음 1급, 중량충격음 3급이상 인증제품) 층간소음재 시공예정이며 입주후 입주자의 생활습관이나 시공오차 등으로 해당 등급기준에 미달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방환기는 개별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세대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등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에 의한 소음, 눈부심,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생활쓰레기 자동집하 설비는 세종시 전체 관로설비 공사일정에 따라 사용시점이 당 현장의 준공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재활용창고 및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위치는 추후 조경계획 및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규모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돌출장식물, 몰딩, 옥상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일조,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함. • 대부분의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옥상조경이 설치되며, 지붕과 면한 일부 세대의 방범이 취약할 수 있고, 옥상 구조물 및 조경시설물 관리에 의해 소음, 사생활권,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상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테마마당 등에는 입주민 다수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모형, 배치도 등을 확인후 계약하여야 함. • 단지 주변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하에 별도구획되며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하여 외부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상세설계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천창, 광덕트, DA, 분리수거장(클린넷시설포함) 위치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당 단지는 상업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주상복합시설로서 인동거리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접 동 및 세대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동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배치되는 테마마당, 휴게소,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단지 내외 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부 세대는 광덕트, DA, 분리수거장(클린넷시설포함),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외부 도로, 단지 출입구, 주차장 진입로 등이 인접하여 소음 및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카탈로그상에서 제시되는 확장형 선택형을 제외하고, 각 발코니 공간별로 확장유무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든 선택형은 확장이에만 선택 가능.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청약신청 및 입주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옥상조경은 대부분 동의 옥상에 부분 또는 전부 설치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M.A.의 건축심의 등의 조정에 따라 식재계획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은 불가하며 향후 식재의 유지관리로 인한 추가적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최상층 옥상조경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 최상층세대 입주민 생활소음, 진동,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GX룸), 작은도서관, 주민휴게시설(주민카페 등), 독서실 등이 있음. • 각 주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자전거 보관소, 환기구(DA), 쓰레기분리수거장(클린넷시설포함)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의 발생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주동 하부 또는 별동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분산배치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등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모형, 안내카다로그, 설계도면을 참조하시어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204동, 206동동 최상층 옥탑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준에 준하여 BIPV가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조망권 침해,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기능과 효율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및 테라스는 세대 디자인 조정에 따라 발생되는 공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이며 상부 낙하물등에 대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필로티 및 테라스 진입 시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입주민 개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함.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필로티 동의 주변 및 외부주요도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건축심의에 따른 자전거 거치대가 1단 또는 2단으로 설치되며 각 동별 시설물의 규모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이동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공공자전거 및 거치대는 기부채납시설임.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며, 심의결과 및 협의내용에 따라 종류, 규모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 탁구장)의 운동장비 및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공용녹지와 세대 앞 개별녹지(돌출발코니 녹지포함)는 공통으로 식재하고 공용녹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 관리로 유지해야하며, 세대별 개별녹지는 개별 세대가 유지관리 하여야 함.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법적하자 보증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책임짐.(단, 세대주의 취향에 의한 의도적 훼손 및 삭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 • 대지 경계에는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담장이 설치되지 않는 열린 아파트로 계획되므로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이 가능함. • 단지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경관조명, 홈네트워킹설비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주동 옥상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부 커뮤니티시설 상부에 조성되는 녹지공간은 관리를 위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휴게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 • 건축한계선 외부에 각종 시설물 설치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음. • 단지 중앙의 통경축에 시설물 설치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편 2장 18조에 따라 철거될 수 있음. • 각 동별 출입구 디자인과 동선은 상이할 수 있음. • 주 출입구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의 학원차량 이용을 위한 승·하차장(Drop Off-Zone)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대형차량의 진입, 소음, 차량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등의 야간조명,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비주거시설의 조명 등에 의하여 눈부심,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경사로, 경사로 지붕구조물이 및 회차공간이 설치되며, 주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여성형주차, 경차주차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하였으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음. • 주동 저층부는 타일마감으로 시공되며,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코어 및 일부 돌출부 디자인,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부위에 수성페인트 마감 부위가 있음) • 본 시공시 세대내 통합단자함 및 전원반 설치로 인하여 벽체 종류 및 해당 부위의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풍동 시험과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디자인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대피공간은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대피 공간 외부창호는 안전성 화재 및 비상시에만 개폐 사용하시기 바람. • 현관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의 발코니 확장여부선택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가용공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대피공간의 경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마감자재자체의품질상하자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악세사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건립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치 및 설치는 평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타입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후면 발코니에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됨. • 동하부 지하층에 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 길이 및 위치가 차이나며,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수납가구가 설치되는 후면 및 바닥, 천장부분은 별도의 마감이 없음. • 발코니2 천장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되며, 배관노출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도어 및 테라스 출입도어, 다용도실 출입도어 등 여닫이 PD는 유리가 없는 단열판넬도어로 계획되어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욕실장 등의 마감재 치수 및 설치위치, 시공디테일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등) 및 천연유사자재(강마루, 인조대리석)의 경우 본공사 시 자재의 특성 상 패턴 및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전동빨래건조대는 확장 시 제공됨. 단 119B, 145P, 149P 타입의 경우는 미제공 됨. • 확장시 제공되는 주방가전소물장은 주방평면 레이아웃에 따라 일부타입에만 제공되며, 타입별로 위치 및 사이즈, 색상은 상이할 수 있음.(84B, 84B-1, 114A, 114D, 147P, 149P에만 제공됨) • 확장시 제공되는 김치냉장고장은 2가지 형태로 선택 가능하며 주방평면 레이아웃에 따라 타입별로 위치 및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및 옵션계약서를 반드시 참조 • 주방 상부장 하부에 설치되는 악세사리는 주방레이아웃에 따라 설치 종류와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 • 85㎡ 초과 타입에 확장시 원슬라이딩도어 형태의 현관중문이 제공되며, 평면구조에 따라 타입별로 개폐방향, 사이즈,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탁실 선반은 확장시 일부타입에만 제공되며, 위치 및 사이즈, 색상이 상이할 수 있음.(114A, 114B-1,2, 114C, 114C-1, 114E에만 제공됨) • 확장시 안방TV장+남녀분리드레스룸은 일부타입에만 제공되며, 타입별로 위치 및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음.(114C, 114C-1, 114D, 114E에만 제공됨) • 확장시 침실1 또는 침실2에 자녀드레스룸이 제공되는 타입은 자녀 붙박이장이 제공되지 않으며, 자녀 드레스룸의 위치 및 사이즈, 가구마감 색상은 상이할 수 있음. (84B, 84B-1, 84F, 99C, 99D, 99E, 100A-1, 100A-2, 114A에 해당함. 복층형타입과 펜트타입은 제외) • 201동의 경우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2동의 경우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2동의 경우 후면부에 근린생활시설의 냉각탑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3동의 경우 하부에 주민운동시설 및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204동의 경우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5동의 경우 상부에 전망대(근린생활시설) 및 하부에 스테이케이션, 근린생활시설,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205동의 경우 상부에 설치되는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은 205동의 주동출입구 및 수직동선을 이용하게 되므로, 입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205동의 경우 33층,34층(2개층)에 실내정원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5동의 경우 20층 주거용도 및 비주거용도의 피난안전 구역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5동은 1층 전망공간 로비, 45~49층 전망 및 휴게공간(근린생활시설)의 비주거용도가 있음 • 206동의 경우 하부에 경로당, 주민카페 및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7동의 경우 하부에 어린이집 및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8동의 경우 하부에 작은도서관, 독서실, 맘앤키즈카페 및 환기구(DA)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 냄새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2동,204동,206동의 경우 옥탑에 옥외안테나 및 중계기가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204동,206동의 경우 옥탑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동(201동,202동,203동,204동,205동,206동,207동,208동)의 경우 하부에 제연휀룸, 열교환실, 팬룸, 빗물저류조,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팬트세대(147P, 149P)의 테라스는 청소용 고리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단지 관리시 협조하여야함. • 거실 혹은 침실 상부에 윗층의 외부 테라스가 조성되는 타입의 경우 단열 등의 계획으로 인해 일부 우물천정 형태 및 유상옵션 선택시 에어컨 계획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음. • HO3블럭의 경비실은 주출입구에 1개소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여성형주차, 경차주차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당 단지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간 주차장이 같은 지하공간에 계획된 단지로, 근린생활시설 방문자는 단지 남측의 주출입구를 사용하고 지하 1층 일부 지정된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 당 단지의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램프는 단지북측에 2개소이며, 그 중 동측의 램프로만 택배차량 및 조업차량이 이용할 수 있음. • 각 주동 지상 1층 필로티에 자전거보관소가 1단 및 2단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필로티가 없는 동이나 필로티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 동에서는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소 이용시 각 주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옥상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부 커뮤니티시설 상부에 조성되는 녹지공간은 관리를 위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휴게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되었으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의 통일감을 부여하되 입주 후 외부의 색채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205동의 경우 상부에 설치되는 스텝가든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강조색 적용으로 타 단지와의 차별성 있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입주민 기호에 따라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HO3 블록에는 스테이케이션(주민공방), 스테이케이션2(커뮤니티 키친), 스테이케이션3(다목적취미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스테이케이션 1,2,3은 2-4생활권 주민을 비롯한 세종시 및 인접도시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음. • 스테이케이션 시설물 :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장, 제5장]이며, 커뮤니티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과 접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공간계획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공간 효율성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스테이케이션의 특성상 단지 주민과 세종시민, 인접도시의 활동가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시스템으로 단지의 외부인의 이용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스테이케이션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함. • 문주 디자인 및 미술장식품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2-4 생활권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라 그 기준에 준하여 계획 설치될 예정임. • 아파트 및 상가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음.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부분의 경계는 별도로 없음. • 주동일부입면에 유리로 마감이 되어 눈부심에 의한 시각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각 주동 하부(5층 이하)에는 건강계단이 설치되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가가 부담하여야함. • 일부 건강계단은 옥외계단으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함. • 201동, 202동, 204동 하부의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는 비상용 옥외계단은 화재시 피난용도 및 옥상의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에 설치되는 창고는 공용창고이므로 세대전용창고로 변경할 수 없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9:1로 배분하고,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급금액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는 별더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함.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소방압사시 가압펌프실(202동 13층, 203동 13층, 204동 8층,205동 13층, 206동 7층) 주변세대는 소음과 진동이 있을 수 있음. • 세대앞 돌출테라스 식재는 개별관리, 건강계단등 식재화단은 공동관리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등)에 제시된 입면색채는 실재 시공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본 공동주택은 지상2층(일부 1층)의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위치함. • 같은 단위세대에서도 단열재 위치와 벽두께가 일부 다를 수 있음. • 일부 최상층 상부는 주민이 사용하는 옥상정원이므로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형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수 있음. • 필로티 및 공중정원과 옥상정원 옆, 상,하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및 공중정원과 옥상정원 상부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 질 수 있음. • 우수 배관 등은 실시설계시 노출 가능함. •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승강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주방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 주방배기 덕트가 설치 예정으로 상부장의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완강기 위치와 완강기 설치에 따른 창호개폐방향은 추후 실시설계시 변경가능 함. • 일부세대는 완강기로 피난시 상가, 부대시설 등 저층부 지붕과 공중정원 등을 거쳐서 피난동선이 계획 될 수 있음. • 건강계단과 공중정원 및 옥상정원의 상하 및 같은 층 세대는 소음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승강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식재로 저층부 일부세대에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세대의 최상부층 옥상(공중정원 포함)에는 필요시 무동력팬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동저층부의 타일마감 범위 및 크기,색채는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돌출테라스, 돌출형매스 계획에 따라 일부세대 창호는 시야확보 및 채광이 불리할 수도 있음. • 일부 동 옥탑 및 측벽에는 태양광집열판(BIPV)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일부세대에 미관저하 및 눈부심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CCTV 카메라, 고효율 조명기구(LED 조명기구) 등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204동, 206동 옥탑층 정면과 좌측 입면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준에 준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고,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조망권 침해,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기능과 효율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이동통신용 중계기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 간 협의를 통해서 설치 가능

I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디자인

1.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의 제품으로 시공됨. 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5. 본 공사시 발코니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6. 가변형 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 벽체이며 철거시 바닥마감이 연결되지 않음. 7.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9.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0.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등에 설치될 수 있음. 11. 본 공사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2.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강마루로 시공방식 및 조색과정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3.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14.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15.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16. 본공사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17.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 본공사시 신발장 및 붙박이장 배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음. 19. 본공사시 주방가구, 붙박이장 하부에는 마루판이 시공되지 않음. 20.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21.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음. 22.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23.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24.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25. 각 세대 도어에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인쇄과정상 오타,오기,실수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설계도서, 마감재리스트 등을 필히 열람하여야 함. 2. 세대는 도서를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실측을 통하여 시공되었으나 시공오차 및 허용오차 범위내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함.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세대 실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예정임.

■ 환경권

1.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3.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4. 전체 동의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5.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전체 동의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6. 주차계획상 지하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할 경우 이동할 수 있음. 7.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8.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9.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천창, 광덕트, DA, 분리수거장(클린넷시설포함) 등의 위치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10.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그에 따른 환기구, 냉각탑등의 위치로 인해 일부세대는 냄새,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1.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등 공용부분은 행정관청의 디자인 심의를 얻은 사항으로 심의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되며 입주민의 개인적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2.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실시설계 검토등에 따라 현 수준의 동등성능 또는 이상으로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 및 투시도, 조감도, 부분투시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또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등을 통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5.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변환경

1.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행정중심복합도시 학교 건립 주체는 세종시 교육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4. 학교 개교시기는 해당 교육관청의 예산사정,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5. 단지 인근 각급 학교의 개교, 전·입학 및 학급편성, 학교(교육과정 등) 운영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될수 있으며 입주시 학교 개교 일정에 따라 타 생활권 학교로 통학 할 수도 있음. 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광장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공품목은 상담사 및 관련도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함.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되어 질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에 부수되는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 될 수 있음.

X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 단열조치 준수함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 부위 기준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방습층 단열재 실내측 설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함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지역난방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별표2)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변압기(표준소비효율 변압기)로 정한 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센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산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를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 장치(거실, 안방, 침실, 주방 각 1개소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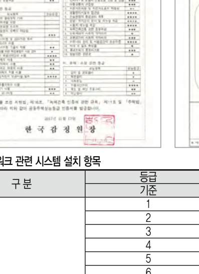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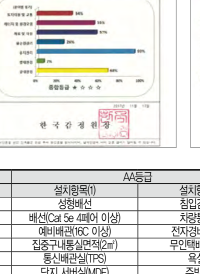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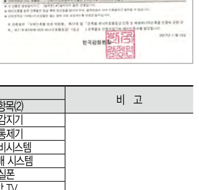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등급 기준	AA등급 설치항목(1)	AA등급 설치항목(2)	비 고
항 목	1	성형배선	침입감지기	
	2	배선(Cat 5e 4페어 이상)	차량통제기	
	3	예비배관(16C 이상)	전자경비시스템	
	4	집중구내통신실면적(2㎡)	무인택배 시스템	
	5	통신배관실(TPS)	욕실폰	
	6	단지 서버실(MDF)	주방 TV	
	7	폐쇄회로 TV장비(CCTV)	일괄소등 제어	
	8	가스밸브 제어기	디지털 도어락	
	9	조명 제어기	엘리베이터 호출	
	10	난방 제어기	현관도어 카메라	
	11	현관방범 감지기	예비전원장치	
	12	주동현관 통제기	대기전력 차단장치	
	13	원격검침 전송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주)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3,454,262,900원	
전 기	(주)영화키스톤건축사무소	893,529,000원	
정보통신, 소방	(주) 나라기술단	704,000,000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종	금 액 (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61,380,931,969	
	기간이자	681,082,315	
	그 밖의 비용	6,878,893,716	
계		68,940,908,000	
공사비	토목	16,879,619,000	
	건축	105,977,896,000	
	기계설비	21,094,860,000	
	그 밖의 공종	42,562,753,000	
	그 밖의 공사비	9,810,696,000	
계		196,325,824,000	
간접비	설계비	4,536,562,784	
	감리비	5,117,791,900	
	부대비	12,884,576,672	
계		22,538,931,356	
그 밖의 비용		47,397,936,644	
합계		335,203,600,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01,122,160,000	제 01222017-101-0004600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보증사고일의 정의 : "보증사고일"이라 함은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 (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	㈜한화건설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804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804
법인등록번호	205911-0005185	110111-0222218	110111-2558405	205911-0005185	110111-0222218
사업자등록번호	409-81-51156	106-81-33808	104-81-73406	409-81-51156	106-81-33808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sejongforet.com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 분양문의 1522-0066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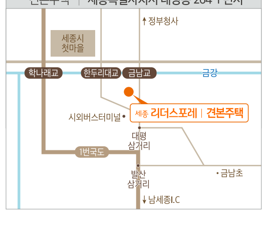

세종 리더스포레

SEJONG LEADER'S FORET

시행·시공 한화건설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

문의 1522-0066